검토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§29③) 호텔업 및 여관업(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), 주점업(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) 예 아니요 고용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근로자수＝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/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근로자\*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명 ③ 증 감(①-②) 명 \*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§23⑩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.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.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예 아니요 공제 금액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다음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(만원)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450 청년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 근로자 등 1,100 1,300 800 900 400 500 \*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서 기간제･단시간 근로자, 파견근로자,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\* 장애인근로자란 ｢장애인복지법｣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상이자 예 아니요